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제작 [] 수리 [] 사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기관	전화번호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1부 3. 별표 21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권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검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